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가합51863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

변론 종결2016. 8. 10.

판결 선고2016. 9. 2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08,089,511원 및 그 중 1,009,057,235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207,847,7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4.부터, 789,079,235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B 주식회사와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8.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접수 제87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2009.6.19.	1,344,250,000원 (1,011,500,000원으로 변경)	2010.6.18. (2016.6.10.로 연장)	신보B2B구매자금대출	국민은행
2	2011.5.19.	921,600,000원 (783,200,000원으로 변경)	2012.5.18. (2016.5.13.로 연장)	기운B2B구매자금대출	신한은행

2011.4.7.	136,000,000원	2012.4.6. (2016.4.1.로 연장)	보증상대처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2011.3.1.자 아스트라제네카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
2011.12.12.	90,000,000원 (72,000,000원으로 변경)	2012.12.11. (2015.12.11.로 연장)	보증상대처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2011. 2. 1.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	한국애보트 주식회사

2)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415,000,000원,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7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위 각 은행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은행 등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2015. 12. 17. 국민은행에게 1,018,237,161원을, 2015. 12. 24.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에게 135,847,738원을, 한국애보트 주식회사에게 72,000,000원을, 2015. 12. 30. 신한은행에게 789,079,23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9,179,926원을 회수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20,979원, 대지급금은 2,084,324원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 행위

1) 피고 A는 2015. 11.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8.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08,089,511원(=대위변제금 2,008,984,208원+확정손해금 20,979원+대지급금 2,084,324원) 및 그 중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09,057,23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2. 17.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 및 한국애보트 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207,847,73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2. 24.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789,079,23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2. 30.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4.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피고 A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3일만인 2015. 11. 2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이상, 그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는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7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변제의 재원이 되는 자산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및 속행기일 지정에 동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중원

판사조윤정

판사윤재필

별지